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지서 공시송달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동법 제10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고지서, 가산고지서를 배달증명(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및 미거주, 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8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



1. 공고사유 :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 3. 18. ~ 2013. 4. 1.(15일)
3. 과태료 금액결정 근거 : 「도로법」 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별표 5서식 참조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5. 의견제출(사전통지) 안내
 -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위 공고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조에 따라 20% 감경된 납부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본 고지서가 발송 됩니다. (아래 납부금액은 본 금액에서 20% 감경된 금액입니다.)
 - 나. 의견 제출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의견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의견 진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 자에 한해 의견 진술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 금액의 50%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제기제출(본고지) 안내

가. 운행제한 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향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나 . 이의제기서는 <http://www.roadfine.go.kr/> 에서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진술서 내에는 회신 받을 주소, 인적사항, 위반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함께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5%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 증가산금(重加算金)**을 추가로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

나.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 가산금 5%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7%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

다.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신용관리 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 055-740-2620 , 055-740-2621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